

告示第一〇三號

(八・一〇・二〇)

第二中央土地區劃整理往一里換地予定

地指定期間に關する件

都市計画課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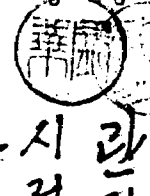
市史資料

미 완 결	건 영 부 기 입 제	관 편	완 결
		호 종	

안 입	수 접
단기 四十八年 十月 十日	단기 년 월 일
제	결
88.10.20	
행 시	
합 고	발 송 문 서 부
장 기	
	제 호 번 제 호



시
내무국
국
장



국
장
추
무
파



법
제
기
안
자

부
지
장



건
명
제
삼
중
영
토
지
구
획
정
리

영
심
리
구
화
지
에
정
지
지
정
의
건

수
제
의
건
단
기
四十八年
十月
十日
제
삼
중
영
토
지
구
획
정
리
영
심
리
구
화
지
에
정
지
지
정
의
건

제
삼
중
영
토
지
구
획
정
리
영
심
리
구
화
지
에
정
지
지
정
의
건
(신
당
동
一
부)

어대하여 별지 도와 같이 환의 예정지로는 바쳐
하옵고 귀한 여의하여 지정고시 고귀 결괘를 안

청하나이다

(우노 시가지 계획행 제 4부 7조의 규정에 의거함)

附二案(告示案)

서울특별시告示第一〇二號

서울특별시計畫廳事務令 第二市界土地區劃整理 施行令

區(城東區新堂羽一部)의 對面 換地決定地는 新堂羽 市街

地計畫令 第四十七條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 하고 拍賣

決定書는 國圖之 當市 建設局 都市計畫課의 備置하고

여 이의 土地所有者 與 關係人의 間 縱覽兒의 供託하고

檢定 四三八年十一月二日

서울특별시長 金泰善

제3안

서건도제 호

간기 四三六번 열 일

서울 특구 별시 강

(간계토리소유자)

앞

건 명

서울도시계획사업 제3종양토지 구획정리 안

십리구내에 있는 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환

지예정지를 시가지계획안 제4부조의 규정에 의

하여 별리지정서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함.

후신.

한리에 대한 도면은 당시(當時) 건설국
도시계획과에 비치(備置) 하였기 양지
하시 알고

제 4 안

외견도제 호

단기 4388번 일 일

외울 특 별 시 부 시 장

성동구 청장 앞

건 명

수제 의 건 서울 도시 계획 사업 제 2 부 양 도 리 구 획

정 리 양 십 리 구 (신당동 일부) 에 대한 환 기

예정 지 를 지 정 하 였 으 나 귀 구 관 내 일 반 으 게

구 리 (周知) 철 리 를 기 하 여 귀 청 및 관 계 동 사

무소의 별기
망하교. 구시문
 사본을
 계시록
 하심은
 무

제5안

단기 48년

결 일

도시 계획 과장

공보과장

앞

건 명

수제 의견 서울 도시 계획 사업 제 2 중 앙 도로 구 획

정리 양심리 구 (성동구 신당동 일부) 에 대한

환기 예정지를 별의 와 같이 지정 고시 되었 아 음

기 시내 주요 신문 에 게재 도록 조 치 하여 주 심 을

무 명 하 나 이 다

(별지 고시문 사본 첨부 함)

너 울 특 별 이